

의안번호	2208948
의 퇴 인	한정애의원
회 답 일	2025.4.25.
추계번호	25B157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u>20퍼센트</u>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물 사용량의 <u>20퍼센트</u>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항)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u>2만제곱미터</u> 이상인 시설물 2의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 2의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의5. 「건축법」 제70조에 따른 건축물	의무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u>20퍼센트</u>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함. 다만, 물 사용량의 <u>20퍼센트</u>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항)	의무규정
		○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제12항)	의무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13항)	재량규정
		○ 제1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제1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확대 및 물 재이용 비율 변경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개정안은 중수도 의무적 설치·운영 대상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건축 연면적 기준을 현행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하고,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을 중수도 의무적 설치·운영 대상 시설물에 포함하는 한편, 중수도 설치 시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임
 - 현행법 제9조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목욕장업 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1) 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 해야 하며, 법 제23조²⁾에 따라 중수도 설치에 대해 설치비용 보조·융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⑥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⑦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⑧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⑨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⑩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⑪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제23조(재정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현행법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 사례는 [표 1]과 같음

[표 1] 중수도 설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사례

지원대상	사업내용	총사업비(총국비)	사업기간	비고
진주시	한국세라믹기술원(100m³/일), 진주종합경기장(60m³/일), 진주실내수영장(60m³/일) 등 총 3개 건축물에 중수도 설치	52.0억원(31.0억원)	‘21~’23	완료
창원시	창원스포츠파크(290m³/일), 진해구청&사회복지관(115m³/일), 의창스포츠헤센터(105m³/일) 등 총 3개 건축물에 중수도 설치	91.7억원(45.9억원)	‘19~’25	공사중
용인시	경기도 소방학교(100m³/일), 경희대 국제캠퍼스(100m³/일) 등 총 2개 건축물에 중수도 설치	19.1억원(11.5억원)	‘25~’27	실시설계중

자료: 환경부

- 개정안에 따라 중수도 의무적 설치 대상 시설물이 확대되고 중수도 설치시설물 재이용 비율이 상향되어 중수도 시설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중수도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와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 사업 물량 및 규모, 설치 단가 등 장래의 구체적인 계획을 예측할 수 없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2023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중수도는 1,018개소이며, 2025년 기준 중수도 용량별 설치 단가는 [표 2]와 같음

[표 2] 중수도 용량별 공사비 (2025년 3월 기준)

(단위: 백만원)

시설용량 (m ³ /일)	저농도 유입시 공사비 (모래/활성탄여과 + 오존산화) $Y = 109.81X^{0.3253}$	중농도 유입시 공사비 (생물 + 막분리 + 오존산화) $Y = 86.95X^{0.5046}$
10	232	278
30	332	484
50	392	626
80	457	794
100	491	888
150	560	1,090
200	615	1,260
300	702	1,546
400	771	1,288
500	829	2,001

- 주: 1) 중수도 시설 유입원수 수질 저농도(물놀이시설 및 목욕탕 배출수 등)와 중농도(샤워수등 일반 건축물의 배출수)로 구분하였으며, 이용 용도는 청소·화장실 용수 및 조경용수로 설정함
 2) 저농도 유입시 처리시설은 스크린, 유량조정조, 모래여과, 활성탄여과, 오존산화, 저류시설, 송·배수시설(양정 15m)로 구성(다만, 유입수질이 나쁜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중농도 공사비를 적용하여 검토)
 3) 중농도 유입시 스크린, 유량조정조, 막분리, 오존산화, 저류시설, 송·배수시설(양정 15m)로 구성
 4) 표에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시설에 대한 표준사업비는 함수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함수식의 y는 사업비, x는 시설용량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

자료: 환경부

□ 중수도 관리·운영비용 지원(안 제9조제13항 신설)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수도를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수도 관리·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규모,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지원대상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개정안에서 중수도 관리·운영 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중수도 소유자·관리자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안 제9조제12항 및 제14항 신설)
 - 개정안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계를 위해서는 교육비용 부담주체 등 전문교육의 운영방식과 교육대상자의 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전문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은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